

# 마포구 여성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1. 11. 29.  
북지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 11. 16.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21. 11. 17.
- 다. 상정일자 :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2021. 11. 29.)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여성가족과장

### 가. 제안이유

여성의 권익증진과 다양한 성별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마포구 여성센터의 운영을 역량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마포구의회 동의의를 구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1) 위탁사무명 : 마포구 여성센터 운영사무
- 2) 민간위탁 내용

- 위탁기간 : 3년
- 위탁사무의 내용 및 범위 : 마포구 여성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 321,000천원(민간위탁금)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일반운영비	신규 물품취득비	
총 계	321,000	150,000	32,000	94,000	45,000

※ 여성센터 리모델링 공사 관련 소요예산 : 2,023.6백만원

- 설계용역비 : 43.6백만원(2021년 추경)
- 리모델링 공사비 : 1,980.0백만원(2022년 본예산)

- 위탁시설 개요

시설명(가칭)	소재지	규 모	개관예정
마포구 여성센터	대흥로 122	624.2m <sup>2</sup> 지상4/지하1	2022년 6월
<b>위 치 도</b>			

### 3) 세부추진일정

- 민간위탁운영체 공개모집 : 2022.3.~ 4.
- 리모델링 공사 등 환경조성 추진 : 2022.1.~ 6.
- 마포구 여성센터 개관 : 2022.6.

### 3. 검토보고 (박춘주 전문위원)

- 본 동의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다양한 성별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마포구 여성센터의 운영을 역량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마포구의회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마포구 여성센터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다양한 젠더폭력 대응 강화 등을 위해 『양성평등 기본법』 제45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1조에 근거하여 신규 설치되는 시설이며, 마포구 여성센터에서 수행하는 사무들은 같은 조례 제47조 “사무의 위탁”의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들로 마포구 여성센터의 운영사무 또한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해당된다 생각됨.
- 참고로 본 동의안과 별도로 금번 회기에 마포구 여성센터를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마포구 여성센터의 설치 및 위탁관리 등에 대한 세부 근거 규정들이 신설 중에 있음.

- 주요내용으로 위탁사무는 마포구 여성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이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기간은 3년에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으로 본 동의안은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으로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위와 같이 마포구 여성센터가 관련법령 등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등이 이루어지고 양성평등 정책 등 관련사무가 추진 되겠지만 센터의 설치와 사업 추진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사업 주관부서에서는 마포구 여성센터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후에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용자 등이 만족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참고 자료 : 관련법규**

## [ 관련법규 ]

###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1조(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 범위와 위탁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8. 기타 : 없음